

영등포구민회관내 입주단체(5개)에서 시우회를 제외하고, 자유총연맹 지부, 국가유공단체, 새마을관련 5개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입주단체로 할 것을 수정동의

**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內職能團體
入住에관한同意案**

의안 번호	136
----------	-----

제출년월일 : 1992년 11월 19일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同意理由

○ 현재 구청사의 사무실 사용 현황은 양적, 질적으로 늘어난 행정기능과 대민봉사 차원에 비추어 협소하여 민원봉사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구청 대강당의 사무실 이용 관계로 직원교육은 물론, 각종 구민행사 사용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 구청에 입주되어 있는 직능단체만이라도 구민회관 준공에 맞춰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 사용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함.

2. 主要内容

- 입주예정단체
 - 자유총연맹 지부(중층 10명)
 - 국가유공단체(중층 15명)
 - 새마을관련 5개단체(중층 25명)
 - 바르게살기협의회(중층 10명)
 - 시우회(3층 11명)
 - 대한무공수훈자회(3층 9.5명)

3. 入住根據

- 자유총연맹지부 : 행정보조('76.2.10)
- 국가유공단체 : 보훈처 협조사항('76.7.1)

- 새마을관련 5개단체 : 행정협조('80.9.20)
- 바르게살기협의회 : 행정협조('81.4.7)
- 시우회 : 행정협조('87.11.18)
- 대한무공수훈자회 : 보훈처협조('76.7.1)

**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內職能團體
入住에관한同意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항 2호와 관련 영등포구민회관내 6개 직능단체(자유총연맹, 국가유공단체, 새마을관련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우회, 대한무공수훈자회)를 입주토록 한다.

**永登浦區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
案審査報告書**

199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년 11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5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12.14)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要旨

(提案說明者 : 永登浦區廳長)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를 작성,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구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주요골자

○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단위:천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사업비
세 입 결 산 액	67,154,515,437	65,680,040,078	1,017,347,459	457,127,900
세 입 결 산 액	53,721,479,947	52,482,981,887	891,098,060	347,500,000
세 계 잉 여 금	13,432,935,490	13,197,058,191	126,249,399	106,627,900
• 사 고 이 월	6,085,452,442	6,085,452,442		
• 보 조 금 사	81,702,808	81,702,808		
• 순세계 잉여금	7,265,780,240	7,029,902,808	126,249,399	106,627,900
예 비 비 지 출				
• 지 출 승 인 액	263,229,000	263,229,000		
• 지 출 액	225,785,310	225,785,310		

3. 審査結果: 원안 가결